

| | | |
|----------|------|---|
| 의안 번호 | 1506 | [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] 검 토 보 고 서 |
|----------|------|---|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8. 11. 27.(화)
- 나. 제출자 : 신성봉 의원 외 8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11. 27.(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12. 12.(수)

2. 제안이유

- 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운영하고 있는 일부 미비한 규칙을 보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내실있게 공무국외연수 등을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의 범위를 정함(안 제2조)
- 나.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의 기본 원칙을 정함(안 제3조)
- 다.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을 정함
(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)
- 라.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허가권자(안 제8조)
- 마.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계획서 제출(안 제9조)
- 바.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제출(안 제11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제정안은 현행 「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」 일부 조항을 변경 또는 신설하여 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-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,
 - 안 제2조(적용범위)에 “의원이 연구 분야별로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에 따라 공무국외연수를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” 추가
 - 안 제3조(공무국외연수 및 출장기본원칙)은 현행 규칙의 심사기준을 보완하여 신설
 - 안 제4조(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)
 - 심의위원회 위원 : “연수전문가, 법조계, 학계, 언론계, 시민사회 단체가 추천한 사람” 으로 중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은 제외
 - 심의위원회 위원수 : “9인 이내” 로 변경(현 규칙 : 7명)
 -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: 2년(한 차례 연임)
 - 안 제5조(심의위원회 기능)에서 심의 생략할 수 있는 규정 변경
 - 외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등 공무국외 출장일 경우 심사 생략
(현 규칙 : 6명의 이내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)
 - 안 제7조(회의록 등 공개)에서 계획서 및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 신설
 - 안 제9조(공무국외연수 및 출장계획서 제출)에서 출국일 30일 전까지

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(현 규칙 : 20일전)

- 안 제10조(대행사 선정)에서 대행사 선정에 관한 규정 신설
- 안 제11조(국외연수 보고서 제출)에서 공무국외연수 인원이 2명 이상이었을 경우 연수중 부여된 개별임무에 대한 보고서 제출 규정 신설

- 그 동안 ‘규칙’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사항을 ‘조례’로 정하고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지방의원의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